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90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훈, 황유정
의원(27명)

1. 제안이유

- 택시운수종사자는 근무 여건 상 도심 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환경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화장실 이용 중 과태료 부과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확대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화장실 이용 시 공영 주차장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15호다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단,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	[기술적 추계 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시 공영주차장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화장실 방문 목적으로 입차하는 차량 숫자가 어느 정도일지 현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그 외 규정은 별다른 재정소요 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7조제1항제15호다목의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중 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30분 이내 주차요금 면제 조항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확대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화장실 방문 목적으로 입차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일지 현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¹⁾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현재 택시의 공영주차장 입차 현황에 대한 파악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며(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자 유선확인), 향후 추진시 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통하여 택시 차량번호를 공영주차장에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입차 차량의 현황 분석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됨